물품공급계약서

매도인 주식회사 ○○○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매수인 주식회사○○○(이하 "을"이라 한다)은 계약당사자간 아래와 같은 물품공급 계약서를 체결한다.

제 1 조 【 매매물 내역 】

품 목	수 량	단 가	급 핵	비고

제 2 조 【 계약금액 】

일금

원정 (

) 부가세포함

제 3 조 【 납품기한 】

발주 후 ○○일 이내

제 4 조 【 인도조건 】

물품의 인도장소는 "을"의 지정장소로 하며 당해 장소까지 운임 및 기타소요비용 일체는 "갑"의 부담으로 한다.

제 5 조 【 지체배상금 】

납품기일 내에 물품의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"을"에게 납품연기 승인을 서면 상으로 신청해야 하며, 이때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계약금액에 대해 1/1000의 지체배상금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.

(단,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라고 "을"이 인정할 때는 지체배상금을 면제 할수 있다.)

제 6 조 【 검 수 】

물품의 검수는 "을"이 지정하는 검수인이 "을"의 지정장소에서 행한 것으로 한다.

제 7 조 【 대금 지급방법 】

을은 본 건 납품과 동시에 선금 일금

원정 (

)

원정

을 갑에게 지불한다. 을은 전조의 검사완료 후 1개월 후 일금

), 2개월 후 일금 원정 (

원정 ()

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다.

제 8 조 【 하자보증 】

- 1. "갑"은 계약물품의 검수완료일로 부터 12개월간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, 또한 비용은 "갑"의 부담으로 한다.
- 2. 하자보증 기간이 경과한 후 "계약물품"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"갑"은 "을"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"을"에게 공급한다.

단 비용은 "을"의 부담으로 한다. 또한 "을"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상으로 계약물품에 대한 정비, 보수 용역을 제공한다.

제 9 조 【 물품의 안전책임 】

물품의 안전책임은 물품을 인도시 까지는 "갑"이 모든 책임을 지며, 물품 인도후 검수가 된 료된 후는 "을"의 책임으로 한다.

제10조 【계약의 해제】

- 1. 물품내용이 계약과 상이 할 때
- 2. 납기 내에 완납하지 못하고, 장기간 시간이 경과되어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
- 3. "갑"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
- 4. 본 건의 진행 중 "을"의 사유에 의한 계약의 파기 시 "갑"에게 기 지불된 계약금, 중도금 및 계약과 관련하여 "을"이 "갑"에게 지불한 대금은 "갑"에게 귀속된다.

제11조 【 기 타 】

- 1. 본 계약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"갑"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- 2. 본 계약상 갑, 을 간에 이의가 있을 시는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.

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, 각각 서명(또는 기명)날인 후 "갑"과 "을"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.

년 월 일

(갑) 주 소 :

회사명 :

대표자 : (인)

연락처 :

(을) 주 소 :

회사명 :

대표자 : (인)

연락처 :